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표준하역비의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을 명확히 규정하며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유효기간을 변경(안 제8조, 제25조)

-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 : 5년 → 5년 이상 10년 이하
-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 : 5년 → 5년 이상 10년 이하

※ 법인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6조)

- 현행 : 재허가 → 개정 : 갱신허가

다. 표준하역비 부담을 위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형태 규정(안 제85조)

라. 「민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요건과 관련하여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개정)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허가”를 각각 “갱신허가”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를 “완전규격출하품(파레트에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파레트 반입 후 재분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로 한다.

구미시 조례 제1128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및 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중도매업의 허가를 득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유효기간 등)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지정절차) ① (생략) ②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절차) ① (생략) ②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5조(허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재허가)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중도매업 재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갱신허가) ①----- ----- ----- ----- 갱신허가----- ----- ----- ----- ----- ----- ----- -----
②시장은 제1항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②----- 갱신허가 -----

허가유효기간 동안의 중도매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3년이
상 10년 범위내에서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도
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
액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
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구미시 조례 제1128호 구미시 농
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85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완전규격출하품(파레
트에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파레
트 반입 후 재분류하여 경매하
는 경우)에 대하여는 표준하역
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구미시 조례 제1128호 구미시 농
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
치) 제10조제1항제3호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 5. 생략

④ ~ ⑥ 생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 ⑤ 생략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제40조(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 ~ ④ 생략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 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 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 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 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 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관 실·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 안 자	과 장	장 도 익
	담 당	김 홍 태
	담 당 자	황 상 근 (480-4763)